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6년 4월 15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
(영문명) Merrill Lynch International, LLC Seoul Branch
(홈페이지) https://business.bofa.com/southkorea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, 29F (무교동, 서울파이낸스센터)
(전 화) 02-3707-0400

대 표 이 사 : 김경덕, 장영주, 신진욱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부문장
(성 명) 이석규 (전 화) 02-3707-0521

작 성 자 : (직 책) 선임팀장
(성 명) 양중균 (전 화) 02-3707-0562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10호)

기타 주요경영사항

1. 제출사유: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.
   당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으로서 영업기금을 말함 (이하 " 영업기금")

2. 주요내용:
   도입금액 : 미화 250,000,000 달러의 원화 상당액 (2026년 4월 16일에 사전약정 외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확정예정)
   도입방법 : 2026년 4월 15일 본점으로부터의 현금 송금 및 영업기금 전입
   증액 전 영업기금 : 22,218,000,000 원
   증액 후 영업기금 : 392,568,000,000원 (2026년 4월 15일자 매매기준율 (미화 1달러당 1,481.40원)을 적용한 예시금액이며, 2026년 4월 16일에 사전약정 외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확정 예정)

3. 결정(발생)일자: 2026. 4. 15
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: 본 영업기금 도입은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을 위한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함.

<기재상의 주의>
주1) [자본사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16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, 이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공시한다.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6년 3월 27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
(영문명) Merrill Lynch International, LLC Seoul Branch
(홈페이지) https://business.bofa.com/southkorea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, 29F (무교동, 서울파이낸스센터)
(전 화) 02-3707-0400

대 표 이 사 : 김경덕, 장영주, 신진욱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선임팀장
(성 명) 조용현 (전 화) 02-3707-0583

작 성 자 : (직 책) 선임팀장
(성 명) 양중균 (전 화) 02-3707-0562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0-1호)

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%(대규모법인 15%)이상 변경

1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 (단위: 천원)	당해사업연도	직전사업연도	증감금액	증감비율(%)
-매출액	186,989,713	136,113,449	50,876,264	37.38%
-영업이익	96,746,278	51,024,485	45,721,793	89.61%
▼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▼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98,798,788	51,330,455	47,468,333	92.48%
-당기순이익	76,144,965	38,843,906	37,301,059	96.03%
-대규모법인여부				
2. 재무현황 (단위: 천원)				
-자산총계	1,817,475,653		1,530,786,627	
-부채총계	1,456,909,819		1,226,365,759	
-자본총계	360,565,834		304,420,868	
-자본금	22,218,000		22,218,000	
-자본총계/자본금 비율(%)	1,622.9%		1,370.2%	
3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	2025년 당기 중 위탁매매수수료 및 자문수수료등 증가로 인한 당기순이익 증가			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			
-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(명)				
-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(명)				
-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		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	

<기재상의 주의>

주1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, 영업손익, 당기순손익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항목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) 이상 증가 또는 감소 (손익계정이 흑자전환 또는 적자전환인 경우를 포함하되, 이 경우에는 증감비율란에 "흑자전환 또는 적자전환"으로 기재한다) 한 사실의 확인 또는 결정이 있은 때「주주총회소집 공고 시점」이전까지 신고한다.

주2) "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"을 기재함에 있어 중단사업손익이 없는 경우에는 "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"을 선택하여 기재한다.

주3) 손익계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해당란에 負(-)표시를 하고,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.

주4) "증감금액"은 당해계정의 당해사업연도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부호를 함께 기재한다.

예1) 당해사업연도 영업이익 1,000원,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500원인 경우 증감금액은「1,000원- 500원= 500원」

예2) 당해사업연도 영업이익 -1,000원,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500원인 경우 증감금액은「-1,000원-500원=-1,500원」

예3) 당해사업연도 영업이익 1,000원,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-500원인 경우 증감금액은「1,000원-(-500원)=1,500원」

주5) "증감비율"은「(증감금액÷|직전사업연도금액|)*100」의 산식으로 산출한 수치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되, 감소의 경우 負(-)표시를 하여 기재한다.

주6) 「자본총계/자본금비율」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.

주7) 상기 기재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"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"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주8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"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" 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